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정은경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인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,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·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노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093호, 2024. 1. 23. 공포, 2026. 1. 24. 시행)됨에 따라,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, 지정 절차, 지정 취소 및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고령친화도시 지정)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(이하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등 정책 운영의 기반을 갖출 것
2. 다음 각 목의 정책을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

가. 의견 청취 등 노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

나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, 교육 등 노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

다. 노인에 대한 돌봄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

라. 노인의 안전 보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

마. 여가 활동 등 노인의 건강을 증진하고, 활력있는 노후 생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

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신청

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

2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 충족여부, 조성 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⑥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, 자문, 협력체계 구축 또는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제2조의3(고령친화도시 지정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또

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경우
2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,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조의2(고령친화도시 지정) ①</u> <u>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고령친</u> <u>화도시(이하 “고령친화도시”라 한</u> <u>다)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</u> <u>같다.</u> <u>1.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</u> <u>직 체계 등 정책 운영의 기반</u> <u>을 갖출 것</u> <u>2. 다음 각 목의 정책을 운영한</u> <u>실적이 있을 것</u> <u>가. 의견 청취 등 노인의 능동적</u> <u>인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</u> <u>나.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</u> <u>원, 교육 등 노인의 역량 강</u> <u>화를 위한 정책</u> <u>다. 노인에 대한 돌봄을 확충하</u> <u>기 위한 정책</u> <u>라. 노인의 안전 보장 및 안전사</u> <u>고 예방을 위한 정책</u> <u>마. 여가 활동 등 노인의 건강을</u> <u>증진하고, 활력있는 노후 생</u> <u>활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</u> <u>3.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</u> <u>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</u>
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을
갖출 것

②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

2.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

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
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친화도시 지정기준 충족여부, 조성 계획 및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여야 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⑤ 제3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.

⑥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재지정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령친화도시의 정책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, 자문, 협력체계 구축 또는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.

제2조의3(고령친화도시 지정 취소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

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
되거나 재지정된 경우

2.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
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
당한 사유 없이 보건복지부장
관에게 제출한 고령친화도시
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
는 경우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
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또는
재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
사실을 통보하고, 그 내용을 인
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
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456